

충청북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
----------	----

제출연월일 : 2002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정이유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공포(2001. 7. 24, 법률 제6490호)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공포(2001. 11. 22, 대통령령 제17412호) 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개선·보완 사항을 정하여
- 도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 및 옥외광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추가(제4조)
 -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지상 변압기함
 -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 교통안전시설물·낙석방지시설물·방음벽·계단등
- 나.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거나 빛이나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광고물등에 피뢰설비 설치·관리 의무 추가(제6조)
- 다. 창문이용 광고물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고 당해건물 사용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도안에 한하여 표시(제11조)

1988년 12월 29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9888호

라. 공연간판중 지주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는 규정신설(제13조)

-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의 높이 5미터, 1면의 면적 10제곱미터 합계 면적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 사용금지

마. 하나의 지정계시판이나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토록 규정(제15조)

바. 광고물관리심의 소위원회 심의사항 규정신설(제20조)

- 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전
- 도지사가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등

사. 안전도점사 대상광고물등의 확대(제22조)

-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아. 제거된 광고물의 관리등 규정 신설(제24조)

- 광고물등을 제거한 취지, 보관장소를 광고물 등이 있던곳에 표시 하여야하고, 광고물의 종류, 수량, 내용등을 시·군계시관 또는 공보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의안전문 : 별첨

관계법령 발췌 : 별첨.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증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판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선전탑
4. 교통수단이용 허가대상 광고물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시·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시·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서류
2.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을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광고물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빌론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들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영 제31조제3항·제4항 규정에 의한 내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제4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
6. 낙석방지시설물
7. 방음벽·석축 및 계단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도지사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표시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별·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6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거나 빛이나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광고물등의 바탕색중 채도 10 이상인 적색(한국표준색표집에 의한다) 또는 흑색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을 하지 아니하는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 이상으로 하고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지역안에서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3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밖의 당해 건물부지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밖에는 도지사·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건물·시설물등의 건물부지안은 제외한다.

1.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지주이용간판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등

제9조(에드빌분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에드빌분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지역안에서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에드빌분간의 수평거리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에드빌분에 대하여는 제7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휴지통, 벤취
2. 공중화장실, 자전거 보관대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고,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2.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고, 벽면으로 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 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께 있어서는 내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계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채도 10 이상인 적색(한국표준색표집에 의한다)또는 흑색 색감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고,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와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 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후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가 설치하고, 그 규격은 가로는 10미터(연립형으로 설치시는 2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사용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내용의 현수막은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와 시장·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할 수 있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며, 연립형은 2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계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계시관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계시관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는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영 제3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등이 주거환경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광고물등이 축사나 식물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시장·군수가 주거환경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 ②영 제31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동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또는 보행자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시장·군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의 표출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등의 규격·모양 또는 색깔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도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도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도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 수는 도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한다.
3. 도소위원회의 위원은 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도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도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도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도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가. 제5조제1항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표시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 지정
 - 나. 제8조제2항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할수 없는 지역
 - 다. 제10조제2항 가로등주름 이용한 광고물 설치지역, 수량, 표시방법 심의라. 제20조제4항 도위원회 및 도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도지사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위원회에서 도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전
 2. 도지사가 도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인정하는 사항
- ③도위원회 또는 도소위원회는 안전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심의안전 제출방법, 심의기준등 도위원회 및 도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안전도검사)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시장·군수가 공중에대한 위해요인이 많다고 인정하여 시·군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

제23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①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시장·군수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및 기타 시장·군수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①시장·군수는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는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당해 시·군의 게시관 또는 공보에 다음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시기간

까지

00시경·군수

1. 현수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2.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뒷 면 >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비 고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 (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사용 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 부위	기초 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집합상태	
		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 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 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풀 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 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 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자재의 상태	
		안정기, 과전류 및 누전차단기,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장애	
기타		기타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 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천재지변, 인위적상황 강풍·폭우·폭설후, 변동 후의 점검사항 폭발·충격 후	

관계법령발췌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조(허가대상 광고물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2. 돌출간판.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3. 옥상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에드빌런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9. 선전탑
10. 아취광고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다만,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②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현수막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제7조(허가 및 신고절차 등) ①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한다)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및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4.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광고내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후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만료일 1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원색도안을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내용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중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수도탱크

5.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
9. 황단보도 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물건

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기타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내용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1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③광고물등은 제14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하는 규격·방법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④광고물등은 교통·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⑦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이내로 한다.<신설 93.2.24>

⑩제1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한 표시방법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3. 건물의 4층이상에는 당해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4.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가. 간판의 크기는 세로 8미터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나.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는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제1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옥상간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소유하거나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주소·상표(표시면적은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한 입체형 또는 판이나 옥상구조물에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공업지역(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그 지역이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다.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과 그 연접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3.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②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특별시에서는 5층,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또는 5층중 당해 광역시의 조례가 정하는 층,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16층이상의 자기의 건물 옥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2. 최저층수미만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내온류(비점멸용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높이 180센티미터이내의 간판(1면인 경우에 한 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
3.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⑤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에서는 간판(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드빌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 내지 50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업소가 입주하여 상품선전이 아닌 자기업소의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과 공업지역안에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은 이호 본문의 규정에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아니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도로중 왕복 8차

로이상의 도로와 시 및 군지역에 있는 도로중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간에는 이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 한하여 표시하되,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간판의 규격은 8미터이내로 표시하되,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 구역밖에는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도시계획구역밖인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내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내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에드빌문의 표시방법) ①공중에 띄우는 에드빌문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4. 공중에 띄우는 에드빌문간에는 1킬로미터이상으로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에드빌문을 이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에드빌문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에드빌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에드빌문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5. 에드빌문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불링핀 모형의 간판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19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전주 및 가로등주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에보탑
3.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4.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번호판 및 현수막지정계시대
5. 그밖의 공공시설물중 시·도조례로 정하는 편의시설물로서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

③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기둥에 밀착시켜야 하며,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하나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전표지가 부착된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기둥둘레의 2분의 1이내, 세로크기는 1미터이내이어야 한다.
5.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16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30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창문이용 광고물중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1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 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의2(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광고물 등중 동조제2호·제4호·제7호·제10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세로형간판 : 문자·도형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4. 공연간판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벽면에 설치하는 광고

7. 현수막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계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10. 벽 보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지정계시판·지정벽보 판 기타 시설물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11. 전 단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제3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네온류를 사용하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적색류네온의 표출면적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1항 각호의 지역중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일반주거지역중 폭이 15미터이상인 도로변을 제외한다.
- 2의2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역과 인접된 지역에는 주거환경의 보호등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3.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결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 또는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15미터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적색류의 사용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광성 적색류의 색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항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전광류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에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 ①시·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에서는 제13조 내지 제30조·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중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한한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2.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제10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역등을 제외한다)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②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등 중에서 시·

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

제34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2.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6.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공중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시설 및 장비·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수·검사요령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40조의2(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당해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 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이를 즉시 폐기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자치구의 게시관 또는 공보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의3(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4에서 같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과태료부과, 광고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 (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1.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보호각의 기준을 60도(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45도)로 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갯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할 것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가연성물질과는 20센티미터이상, 전선·전화선 또는 가스관과는 1.5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에서 1.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전선관 기타 금속체는 접지할 것. 다만,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과 전선·전화선·가스관·전선관 기타 금속체와의 사이에 철근콘크리트조의 벽등 절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돌침은 지름 12밀리미터이상인 알루미늄·철 또는 강봉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성능을 갖춘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5.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그 단면적이 동의 경우 30제곱밀리미터이상, 알루미늄의 경우 50제곱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6.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은 50미터이하로 하고, 각 인하도선당 1개이상의 접지극을 지하 3미터이상 또는 상수면밑에 매설할 것